

2014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II. 전형일정

III. 지원 및 선발방법

IV. 지원자격

V. 제출서류

VI. 원서 및 서류접수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VIII. 유의사항

● **부록**

1. 재외국민·외국인전형 지원신청서
2. Apostille(아포스티유) 신청서
3.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4. 제3국 수학 사유서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전형	외국인전형
간호	간호학과	8명 이내	약간명
	노인복지보건학과	5명 이내	
보건과학	임상병리학과	5명 이내	
	물리치료학과	6명 이내	
	방사선학과	8명 이내	
	치기공학과	5명 이내	
	병원경영학과	8명 이내	
	언어청각치료학과	6명 이내	
	응용과학	환경공학과	
응용과학	산업보건학과	3명 이내	
	환경행정학과	3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3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3명 이내	
	사회과학	경영학과	
사회과학	유통경영학과	5명 이내	
	경영정보학과	4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4명 이내	
	사회복지상담학과	4명 이내	
	계	19명 이내	

II.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 및 서류 접수	2013.07.02(화) 09:00 ~ 07.12(금) 17: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면접 대상자 발표	2013.07.15(월)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면접	2013.07.16(화)	
합격자 발표	2013.07.18(목)	
등록	2013.12.09(월) ~ 12.11(수) 은행마감시간	부산은행/농협 전 지정
미등록 총원 및 등록	▶ 총원기간 : 2013.12.12(목) ~ 12.16(월) ▶ 등록기간 : 2013.12.12(목) ~ 12.17(화)	

III. 지원 및 선발방법

1. 지원 및 선발방법

가. 지원

- 1개의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외국인전형 원서접수가 수시 원서접수 제한횟수(6회)에 포함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횟수(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 수시모집(재외국민·외국인전형 포함) 합격자는 모집시기가 같은 타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등록할 수 없습니다.(1개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음)
- 수시모집(재외국민·외국인전형 포함)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대학 및 타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면접대상자 선발

- 서류미비자 및 지원 자격 결격사유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이 면접대상자가 됩니다.

다. 합격자 선발

- 합격자는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100%를 총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예비 후보자는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 전형요소

모집구분	면접	논술(국어)	비고
전 모집단위	60%	40%	면접불참시 불합격 처리됨

※ 논술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국문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IV. 지원자격

1. 재외국민전형

가. 자격기준

-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12년 이상의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지원 자격	자격 요건	공통 학력 요건	비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의 학교에서 <u>고교과정 2년 연속</u> 또는 <u>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연속 재학한 자</u> (2년 이상 연속 재학하지 않은 경우, <u>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자</u>)	우리 대학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내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명과 지원자의 체류기간 적용)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 (부모 중 1명과 지원자의 체류기간 적용)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 중 1명과 지원자의 체류기간 적용)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부모 중 1명과 지원자의 체류기간 적용)		
기타 재외국민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의 자녀(지원자 및 부모 모두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12년)에 상응하는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정원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아래참조(p.5)	

나. 자격요건 유의사항

1)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기간의 산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봄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된 학교만 인정하며, 부모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2) 영주교포 자녀

- 부모 및 지원자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어야 함
- 지원 당시 부모 및 지원자의 주민등록은 이민으로 인해 말소가 되어있어야 함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함

3)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4)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가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6) 상사직원 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7)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과정 이수자)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예외)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둠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2. 외국인전형

가. 자격기준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공통학력조건	비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우리 대학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 별 정원의 10% 이내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취득한 자(단, 대만국적 국내 영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외국인은 제외)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취득한 자(단, 대만국적 국내 영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외국인은 제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나. 자격요건 주의사항

- 학생 본인이 자격대상자로서, 부모의 해외에서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 개정국적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는 ‘복수국적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 12년제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

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학교에서 어학연수·유학 등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불인정함
-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예 : 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V. 제출서류

1. 영주교포자녀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⑥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학생)	

2. 해외근무공무원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자녀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외국 근무경력증명 내용기재)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보호자·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⑧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 ⑨ 해외지점(법인)설치 관계서류(해당자) ⑩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3. 기타 재외국민자녀(자영업·현지회사근무·선교사·파견교직원자녀)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외국체류 경력증명 내용기재 - 해당자)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보호자·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학생) ⑧ 세금납부 증명서류(자영업자) ⑨ 현지법인 설치 관계서류(현지회사 근무자) ⑩ 사업자등록증 (해외 취업자, 자영업자) ⑪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선교사)	

4. 전교육과정 이수자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	

5. 북한이탈주민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6.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TOPIK 3급 이상 성적표	

7.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구 비 서 류	비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⑤ 전 가족 호구부 사본 ⑥ 외국국적증명서(부·모·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⑧ 재정보증서류(미화 1만2천달러 이상, 1개월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⑨ 거민증사본(부모·학생/ 앞·뒷면) ⑩ 친족관계증명서(유학생과 부모의 가족관계 확인서) ⑪ TOPIK 3급 이상 성적표	

8.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구 비 서 류	비 고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전 가족 호구부 사본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재정보증서류(미화 1만2천달러 이상, 1개월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⑨ 거민증사본(부모·학생/ 앞·뒷면) ⑩ 친족관계증명서(유학생과 부모의 가족관계 확인서) ⑪ TOPIK 3급 이상 성적표	

9.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입학 ~ 졸업)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Seal)이 있어야 함

나.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초·중·고교의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성적우수 등으로 월반, 조기졸업을 한 경우 이에 관한 해당 학교의 증명서 첨부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는 학년/학기 단위가 명시되어야 함

다. 영주권 사본

- 지원자 및 부모 모두 해당,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시

라. 제3국 수학인정서

- 지원자가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급

마. 재외국민등록필증

-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급의 부·모·지원자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명시

바. 주민등록등본

- 필요할 경우 본교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사.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한 해외지사 및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외국환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허가한 현지법인·금융기관 ⇒ 해외법인설치확인서

아.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정부 발급

자. 세금납부 증명서류

- 세금납부 증명서류는 지원자격 취득기간(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연속 재학한 기간) 동안의 세금납부 증명서류를 제출

차. 경력(재직)증명서

- 해외파견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기관의 본사(인사권자) 발급
- 지원자격 취득기간 중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휴직 또는 연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그 이전 1년간의 급여기록사실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카. 사업자등록증

- 해당국 근무기관의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영업허가 증명서류)

타. 재정보증서류

- 미화 1만2천달러 이상, 1개월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파.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최종학교 졸업학력인정서

- 통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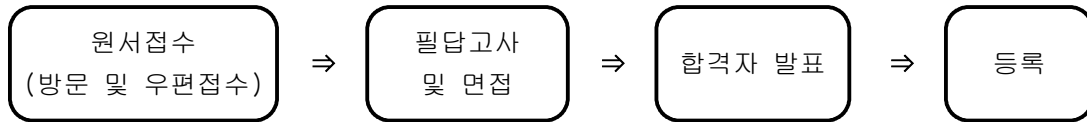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서류를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을 받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9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 바람(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경유증명 해당국)

VI. 원서 및 서류접수

1. 지원절차



2. 접수기간

- 2013.07.02(화) 09:00 ~ 07.12(금) 17:00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전형료

- 전형료 : 50,000원(우편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으로 바꾸어 원서에 동봉하여 납부)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3.07.18(목) 14:00

나. 발표장소

-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cup.ac.kr) 공지 또는 개별통보

다. 합격자 확인

- 반드시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합격자 명단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에 따른 제반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2. 등록

가. 등록기간

- 2013.12.09(월) ~ 12.11(수) 은행 마감시간까지

나. 등록장소

- 부산은행·농협 전국 각 지점

다. 등록금 환불

- 환불기간 : 2013. 12. 12(목) ~ 12. 17(화) 20:50까지
- 환불절차 : 입시홈페이지에 있는 환불시스템을 통해 신청

Ⅷ. 유의사항

1.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또한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2.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학지원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합격 후에는 필히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고교 졸업예정자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제출서류를 입학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6. 부정행위, 대리시험, 시험 중 무선통신기기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또는 입시 부정 관련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7.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이 전형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험 표

부산가톨릭대학교
2014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전형

<입학전형일정>

성명	수험번호								
지원 사항	전 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전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전형							
	지망학과								

면접
: 2013.07.16(화)
(개인별 면접시간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 2013.07.18(목) 14:00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별지 1호 서식]

접수번호													
Apostille(아포스티유)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신청인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대리인 인적사항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3. 신청 문서 관련													
문서의 명칭													
제출대상 국가													
문서발급기관	(국문)	(영문)											
기관장 성명	(국문)	(영문)											
<p>이상과 같이 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또는 대리인) : _____ (서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p>수입인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f2f2f2;"> <tr> <th colspan="2">공용란 (Official Only)</th> </tr> <tr> <td style="width: 50%;">접수일자</td> <td></td> </tr> <tr> <td>발급여부</td> <td>발급 (), 불허 ()</td> </tr> <tr> <td>발급일자</td> <td></td> </tr> <tr> <td>발급번호</td> <td></td> </tr> </table>			공용란 (Official Only)		접수일자		발급여부	발급 (), 불허 ()	발급일자		발급번호	
공용란 (Official Only)													
접수일자													
발급여부	발급 (), 불허 ()												
발급일자													
발급번호													

[별지 2호 서식]

접수번호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신청인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대리인 인적사항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3. 신청 문서 관련			
문서의 명칭			
제출대상 공관			
문서발급기관	(국문)	(영문)	
<p>이상과 같이 본부영사확인 발급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또는 대리인) : _____ (서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수입인지</div>	공용란 (Official Only)		
	접수일자		
	발급여부	발급 (), 불허 ()	
	발급일자		
	발급번호		

